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혜련 의원(대표)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407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 : 2018년 3월 5일

발 의 자 : 김혜련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강성언, 김경자(양천),
김기대, 김동욱, 김동윤,
김영한, 김용석(도봉),
김정태, 김제리, 문영민,
문형주, 박기열, 박호근,
서영진, 서운기, 유광상,
유 용, 이병해, 이현찬,
장우윤, 장인홍, 장홍순,
최영수, 최판술 의원(24명)

1. 제안 이유

현재 우리사회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

2. 주요 골자

가. 교육감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
(안 제8조제2항)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참조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“(교원연수)”를“(교원연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8조(<u>교원연수</u>)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| <p>제8조(<u>교원연수 등</u>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 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를 대 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|